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2. 18.(화) / 총 2 (본문2)
국토교통부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당자	·과장 윤종수, 서기관 이경재 ·☎ (044) 201-3224, 3229
	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유용일 ·☎ (044) 201-3317, 4089
	건설산업과	담당자	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임종채 ·☎ (044) 201-3538, 3542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뉴스1, 2.18.) >

◆ 건설사 퇴직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? ..“부패소지 법령 고쳐라”
 - 건설사 퇴직 임직원의 분양가심사위원 위촉 가능(주택법 시행령), 검사기관
 평가위원회 민간평가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(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) 등
 권익위, 지난해 제·개정 법령 113개에서 부패유발요인 335건 찾아 개선권고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평가
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패영향평가 등 입법절차를
 거쳐 주택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.

□ 먼저,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(19.10.22)하여

○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등록사업자*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
 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

*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

○ 건설사 임직원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심사
 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차단하였으며,

○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여
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
*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
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

□ 아울러,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('19.3.19)하여

-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의 부실 여부와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법령 제·개정 과정을 통해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,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유용일 사무관(☎ 044-201-4089), 건설산업과 임종채 사무관(044-201-354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